

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 - 1400호

「인천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9월 4일

인천광역시 중구청장



## 인천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1. 개 정 사 유

- 『지방재정법』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함.
- 이에 「인천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존속기한을 명시·연장하고자 함.

### 2. 주 요 내 용

- 「인천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조문 개정(안 제3조2항)

### 3. 의 견 제 출

- 이 조례의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(참조 : 건축과)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(건축팀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제출내용
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(\*서식 참조)
- 조례개정안에 대한 찬·반 여부와 그 이유
- 기타 참고사항 등

#### 나. 제출주소 및 문의 전화번호

- 주 소 : (우22315)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 
인천광역시 중구청 건축과(건축팀)
- 전 화 : 032)760-7484 [FAX 032)760-7479]

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3조제2항 중 “2023년 12월 31일로 하되,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4항”을  
“2028년 12월 31일로 하되,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4항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특별회계의 설치) ① (생략)</p> <p>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<u>2023년 12월 31일</u>로 하되,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특별회계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로 하되,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4항----- -.</p>